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(생략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7영업일</u> 이전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제8영업일</u> 이전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생략)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(현행과 같음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7영업일</u> 이전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8영업일</u> 이전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6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제46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

	3. ~ 10. (생 략) ② ~ ⑩ (생 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u>